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경관법 개정('14.2.7 시행)으로 경관계획 수립권자 확대, 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경관계획 관련 규정 개정 등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한 확대(제1장 제4절)

- 인구 10만 초과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의무화,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경관계획 수립권한 부여

나. 법령과 다른 일부 용어를 법령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제4장, 제5장)

- 기본경관계획을 경관계획으로 변경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변경

다.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대상 중 “특정지역”에 관한 부분은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중복 되므로 삭제(제6장)

* 특정지역, 특정경관유형(역사문화, 농어촌, 자연 등), 특정경관요소(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

3. 의견제출

이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8월 0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세종정부청사 6동 418호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
과

(☎ 044-201-3782 팩스 044-201-5574)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